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 우대〉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35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 우대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기웅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4.
3. 회부연월일 : 2026.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 감소지역의 경우 창업 기반과 기업 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큰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 우대(안 제15조의3 신설)

개정안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추진시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5조의3(인구감소지역 우대) 정부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 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 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¹⁾,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1인 창조기업 수는 1,162,529개이고 평균 자본금은 6,055만원이며 평균 매출액은 2억 6,634만원임.²⁾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2026. 3.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현재 전체 226개 시·군·구 중 39.4%인 89개가 지정되어 있음.³⁾

인구감소지역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	갯수
인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	가평군, 연천군	2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3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3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12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6
충남	공주시, 금남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9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0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17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5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천군	11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제2024-15호, 2024. 2. 27. 시행)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 중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소재 기업은 57.5%(667,893개/1,162,529개)이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42.5%(494,636개/1,162,529개)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 1인 창조기업 1,162,529개 중 18.3%인 212,742개를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으로 추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9조부터 제15조⁴⁾까지 규정된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교육훈련 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지식 서비스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지원)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술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2.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15조(금융 지원)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금융 지원, 홍보사업) 추진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하여 소자본·지식기반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자생력 제고, 전문인력의 지역 유입 및 인구구조 개선 등을 도모하는 취지로 이해됨.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 우대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입법기술의 효율성을 위해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우대사항을 규정한 기존 조문에 인구감소지역 우대 근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459

[참고자료]

1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 통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 규모('23년 기준, 추정) : 21.2만개*

* 전국 1인 창조기업 116.2만개('25년 실태조사 결과) 중 18.3%로 추정 산출

○ 국가데이터처에서 받은 1인 창조기업 조사대상 표본 데이터 13,719개사 중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은 2,509개사로 18.3% 수준

<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 현황(추정) >

구분	전국	인구감소지역 (추정)	표본 수	인구감소지역 수	비중
2025년 조사(23년 기준)	1,162,529개사	212,742개사	13,719개사	2,509개사	18.3%

□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현황(2곳, 전국 36곳)

연번	권역	센터명	주관기관명(협력기관)
1	경북 문경	문경시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	경북 안동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 인구감소지역 관련 통계

구분	전국	인구감소지역	비중
경제총조사 (20년 기준, 5년단위)	6,032,022개사	671,971개사	11.4%
주민등록인구현황(25년)	51,117,378명	4,688,124명	9.17%

2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개요(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개요

- **(목적)** 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전문기술의 사업화 및 경영 능력 제고
- **(사업예산)** 59.16억원
 - * '25년부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사업과 통합
- **(예산집행)** 중기부→창업보육협회, 창업진흥원(전담기관)→센터(주관기관)
- **(지원내용)** 사무공간, 판로개척, 창업 교육 및 멘토링 등
 -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무공간, 교육, 전문가 자문, 사업화 등 지원
 - **(사업화)**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광고·홍보, 디자인 등),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 지원
 - **(기반조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매년 실시), 우수기업 포상, 1인 창조 주간행사 등 1인 창조기업 육성 기반 조성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현황 ('26. 5월 기준) >

구 분	수도권(15개)			비수도권(21개)													소 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센터 수	4	9	2	3	1	3	3	1	2	1	1	2	0	1	3	0	36